



2013년 인도 기업법의 사회적책임(CSR) 조항

Otojit Kshetrimayum (인도 비비기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인도 기업법 발달과정

인도에서 기업 활동은 별도의 법으로 규제한다. 이러한 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66년 인도 기업법」이다. 이 법은 영국 기업법에 의거하여 기업 설립, 규제, 청산 등에 관한 다수의 법을 통합, 개정하여 만들어졌다. 1866년 법은 「1882년 인도 기업법」으로 개정되어 1913년까지 유지되었다.

1913년 다시 「1908년 영국 기업(설립)법」에 따라 「1913년 인도 기업법」으로 개정되었다. 1913년 법은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미비점이 드러나 수차례 개정 끝에 「1956년 기업법」이 제정되었다. 1956년 기업법은 인도 독립 후 제정된 것으로 기업들 및 특정 협회들과 관련된 법을 개정 및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도 정부가 1950년 설립한 기업법위원회(바바위원회(Bhabha Committee)로 불림)의 권고에 따라 1913년 기업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되었다.

그 후 57년 동안 기업과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변화하여 1956년 기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3년 8월 29일 「2013년 기업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2013년 8월 30일 발효되면서 1956년 법은 폐지되었다.

■ 2013년 기업법 개정의 배경

인도의 기업 수는 1956년 3만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현재 130만여 개에 달한다. 이전에도 1956년 기업법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60년 동안 25회 개정되었다. 2008년 10월 23일 1956년 기업법을 대체할 기업법안이 인도 하원인 로크 샅하(Lok Sabha)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인도 의회가 해산되면서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2009년 8월 3일 2009년 기업법안이 다시 로크 샅하에 제출되었다(2008년 기업법안을 소폭 수정). 본 법안은 하원 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고서가 2011년 12월 14일 로크 샅하에 제출되었다.¹⁾ 2009년 기업법안은 2012년 12월 18일, 2013년 8월 8일 각각 하원인 로크 샅하와 상원인 라자 샅하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으로 「2013년 기업법」은 2013년 8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2013년 인도 기업법은 29개의 장과 470개의 절과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인도 전국에 적용된다. 동 법은 동 법이나 과거의 기업법, 기타 1999년 보험 규제 및 개발당국에 관한 법, 1949년 은행업 규제법, 2003년 전력법 등 특정 법하에 설립된 기업들 모두에 적용된다.

■ 2013년 기업법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조항

「2013년 기업법 규칙안」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CSR이란 조직이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발전시키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기업 절차와 전략을 채택하여 그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므로 CSR은 자선이나 단순한 기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CSR은 기업 경영방식으로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사회 이익에 가시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자원의 활용을 기업의 이익증대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CSR을 통해 기업의 운영과 성장에 경제, 환경, 사회적 목표를 통합시킨다.”

「1956년 기업법」에는 CSR 조항이 없었고, 『2013년 기업법』(이하 기업법)에서 CSR 관련 조

1) 한편 2011년 12월 14일 로크 샅하에 2011년 기업법안이 제출되었으나 2011년 12월 22일 의회 동계 회기에서 법안 중복을 이유로 철회되었다.

항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CSR 관련 조항은 제9장 제135절에 명시되어 있다. CSR 규정은 인도 기업등록부에 등록된 기업들에만 적용된다. 제135절은 아래의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에게 CSR 준수를 의무화한다.

회계연도의

- 순기업가치가 50억 루피(한화 약 84억 7,500만 원) 이상
- 매출 100억 루피(한화 약 1,695억 원) 이상
- 순이익 5천만 루피 (한화 약 8억 4,750만 원) 이상

위의 기준 3개 중 어느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이사회 산하에 CSR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보고서에는 CSR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기업이 계획하고 이행한 CSR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제134절 (3)관). CSR 보고서는 2014~2015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작성한다(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CSR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CRS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기업에서 추진할 CSR 활동을 정한다.
- 정해진 CSR 활동을 추진하는 데 소요될 지출 금액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 기업의 CSR 정책을 수시로 감시한다.

이사회는 CSR 관련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기업의 이사회는 CSR 위원회가 권고하는 CSR 정책을 승인하고 기업이 관련 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 각 회계연도별로 직전 3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정책 추진에 지출하도록 한다(순이익은 동 법 제198절에 따라 계산한다).
- CSR 활동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 기업의 소재 지역 및 인근 지역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 상기 지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보고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다.

CSR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동 법 부칙 VII에 명시한 CSR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극심한 기아와 빈곤 퇴치
 - 교육 증진
 - 양성평등 및 여성권의 강화
 - 아동 사망률 및 모성 건강 개선
 - 에이즈(HIV)바이러스,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의 퇴치
 - 환경의 지속가능성 도모
 - 고용을 개선하는 직업기술
 - 사회적 사업 프로젝트
 - 총리 산하 국가구제기금이나 여타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사회경제발전 및 구제기금, 불 가족천민, 기타 소외계층, 소수집단, 여성 등의 복지를 위한 기금에 기여
 - 기타 지정되는 사안
- CSR 활동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신설 또는 기존)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단,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라 추진되는 활동은 제외된다.
- CSR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경영모형을 사회·환경적 우선과제와 절차에 통합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 인도 내에서 실시하는 CSR 활동을 고려한다.
- 기업의 임직원이나 가족들에게만 혜택이 국한되지 않는 활동만 CSR 활동으로 간주한다.
- CSR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해당 기업의 사업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CRS 활동을 위한 자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① 평균 순이익의 2%, ② 상기 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CSR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기업이 CSR 활동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자체 조직 설립

기업이 명시한 CSR 정책에 따라 CSR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동 법 제8절에 따른 신탁(Trust) 또는 기업(Company)을 설립 및 등록하거나 기타 인도 내에서 운영하는 협회나 재단을 설

립하는 경우, 출연 기업은 해당 조직이 지원받은 자금으로 추진할 사업/프로그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출연자금이 소기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여타 기업의 조직

기업이 직접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동 법 제8절하의 신탁, 협회, 기업 등을 통해 CSR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지출이 CSR에 책정된 지출의 일부로 인정되려면 해당 조직이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③ 타사와 협업

기업들이 CSR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타사와 협업하거나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CSR 지출을 계산하는 데 해당된다.

CSR정책 보고의무 미실시에 대한 제재

동 법 제134절 (8)관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기업보고서에 해당 연도에 계획하고 이행한 CSR 관련 정책이 상세히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동 법 제134절 [3(0)]관 참조) 5만~250만 루피(한화 약 84만 7천~4,23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각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 루피(한화 약 84만 7천~847만 원)의 벌금형 중 1개 또는 모두에 처할 수 있다.

■ 전망과 과제

2013년 기업법의 CSR 관련 조항으로 인도는 사회복지에 기업의 지출을 의무화한 첫 국가가 되었다. 현재 인도 기업의 평균 CSR 지출은 이익의 1~1.25%로 추정되는데 2013년 기업법은 2%를 제시하고 있다. 동 법이 CSR 지출의 금액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목표 미달 시 이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들에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인도 내 130만여 개 기업 중 CSR 관련 신설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6,000~7,000여 개에 달한다. CSR 조항 적용대상 기업 모두가 이를 준수할 경우, 환경, 기술 개발, 물, 위생 등 분야의 각종 사업에 매년

1,500억~2,000억 루피(한화 약 2조 5천억~3조 3,880억 원)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사업/프로그램을 확장할 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인도의 기업 자선활동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CSR 지출이 법인세법하에서 기업의 지출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13년 기업법에 따라 적용되는 CSR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CSR 지출에 대한 세금 적용은 1961년 인도 법인세법으로 정해지며 이는 중앙직접세위원회(CBDT)가 통보한다. 법인세 감면을 명확히 제시하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CSR 활동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CSR 조항 찬성론자들은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핵심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동 법은 그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든 지출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출하지 않은 이유만 공개하면 준수하지 않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의무 지출 조항을 보다 의미 있게 하려면 수익 부족이나 경기침체 등 특이사항에 명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동 법의 주요 장애요인은 바로 기업들의 CSR 활동이 소재지 인근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의 활동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수 있으며 CSR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IT 분야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당면할 것이다. 동 법 부칙 VII하의 CSR 활동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부칙 VII에 제시된 CSR 활동의 정의에 대해 “기타 지정되는 사안”에서 “기업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타 활동”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CSR 활동에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CSR 위원회가 지출을 결정하는 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LI**